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근거 마련〉
■ 우재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00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1. 중기부·기후부 관련 지원사업 현황	10
2. 비용추계서 요약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우재준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4.
3. 회부연월일 : 2025. 1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유소 경영악화가 심화되면서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500여 곳의 주유소가 휴업·폐업을 신고하고 있으며, 특히 휴업 주유소의 경우 2021년 512건에서 2024년 601건 등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임.

한편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시설 철거, 토양오염도조사 및 토양정화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주유소 휴업 혹은 장기간 방치를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옴.

방치된 주유소는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석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업 주유소 안전사고

예방 및 토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을 위한 지원금 지급,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12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5(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폐업 및 사업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주유소는 2020년 11,589개소에서 2024년 10,875개소로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음.

주유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국 주유소 수	11,589	11,378	11,144	11,023	10,875
폐업 주유소 수	220	283	245	184	162

자료: 산업통상부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를 폐업하는 경우 「위험물안전관리법」¹⁾에 따른 위험물저장시설 철거, 「토양환경보전법」²⁾에 따른 토양정화를 하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그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土壤試料)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오염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② ~ ⑥ (생 략)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 (생 략)

②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 외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4. 누출검사대상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누출검사를

여야 하나,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위험물저장시설과 오염된 토양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석유판매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사업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주유소의 위험물저장시설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취지를 고려할 때 안 제12조의5제1항은 석유판매업자의 폐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문언상으로는 지원 대상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 기술하고 있음. 이에 대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석유판매업자’로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받을 것

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나. 제3호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 변경에 따른 토양오염도검사

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누출검사대상시설만 해당한다)를 받을 것

③ ~ ⑤ (생략)

둘째,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지원 및 사업전환 지원의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³⁾.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입법례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정보제공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판로(販路)·기술 및 진출업종 등 사업전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2조(컨설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에게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의 개선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5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 2.(생략)

제26조(유희설비의 유통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과정 등에서 생기는 유희설비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5. (생략)

또한 현행법⁴⁾은 석유판매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⁵⁾, 「토양환경보전법」⁶⁾

3)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사업전환 지원사업은 참고자료 1 참조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2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① 석유판매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상호협동과 자주적인 경제활동 및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⑤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의3(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사업
2. 조합원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지원사업
3. 조합원의 전업 및 폐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4. 조합원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조의4(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 공제부금, 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5)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공제조합 설립 인가 신청사례는 없음.

6)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화책임자로서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이하 “토양정화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유출·투기(投棄)·방치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
3. 합병·상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② ~ ④ (생략)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제4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비용 및 토양정화등으로 인한 해당 토지 가액의 상승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해당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점유 또는 운영을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2.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양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토양정화 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개정안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석유판매사업자에 대한 폐업 및 사업전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폐업은 석유판매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국가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에너지 전환기 주유소 사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시 주유소 사업자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체계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 중복 규정의 문제가 있다는 점, ② 기존 법에 따른 지원체계와 별도로 특정 업종의 민간사업자만을 지원하는 것은 타 경쟁 연료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주유소 폐업 비용⁷⁾ 중 토양정화비용⁸⁾의 50%를 폐업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소요되

3.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제1항제4호의 정화책임자로서 토양정화등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해당 토지의 가액 및 토지의 소유 또는 점유를 통하여 얻었거나 향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 ⑦ (생략)

7) 철거비용 및 토양정화비용

8) 2022년 기준 주유소 1개당 최소 7,000만원

는 비용은 향후 5년간 총 306억 7,300만원, 연평균 61억 3,500만원으로 추정됨⁹⁾.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대표발의, 2208641호)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2207056호)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임.

문 의 처
02)6788-5468

9)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비용추계서 요약은 참고자료 2 참조.

참고 1

중기부 · 기후부 관련 지원사업 현황

□ 희망리턴패키지사업 (중기부)

- (관련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6년 예산) 3,056억원
- (지원대상)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위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신속·안전한 폐업 후 지속가능한 재취업과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
 - ①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 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지원' 패키지를 통한 안정적이고 신속한 폐업지원
 - ② 특화 취업지원 : 폐업(예정)소상공인의 맞춤형 취업교육 및 수당지급, 심리회복·치유 프로그램, 지역별 취업 네트워킹 활성화 등
 - ③ 재기사업화 지원 : 일반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전환, 재창업 지원 (중기부)

- (관련규정)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26년 예산) 4,125억원
- (지원대상)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폐업 후 예비재창업자 등
- (지원내용) 경영상 어려움으로 사업전환(추가), 재창업을 추진하는 경우 융자 등 정책자금 지원
 - ① 사업전환자금 : 3,125억원, ② 재창업자금 : 1,000억원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기후에너지부)

- (관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사업법」 등
- ('26년 예산) 4,517억원
- (지원내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 대상 충전기 설치 자금 보조
 - ① 급속충전기 지원 : 2,842억원, ② 중·완속·이륜차 충전기 지원 : 1,675억원

참고 2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5(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 1.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 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에 필요한 지원 - 3. 그 밖에 폐업 및 사업전환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I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등이 폐업 주유소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에 60억 8,700만원원, 2031년에 61억 8,3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06억 7,300만원(연평균 61억 3,500만원)으로 추계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평균
석유판매사업자의 폐업 지원 등(안 제12조의5)	6,087	6,111	6,134	6,158	6,183	30,673	6,135

- 개정안의 폐업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토양정화비용(2022년 기준 주유소 1개당 최소 7,000만원)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 개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은 폐업에 따른 비용(토양정화비용)에 대해 국가 등이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